3.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 학칙 제84조에 규정된 교수학습지원센터(이하 '센터'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요직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① 교수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법과 학습자료의 개발 및 지원
② 교수 및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연구 및 지원
③ 교수학습지원과 관련한 교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
④ 기타 교수학습지원에 관한 사항

제2장 교수 및 학습 프로그램

제3조(교수 및 학습 프로그램) ① 본교의 교수역량강화를 위한 교수법과 학습 자료의 개발을 위하여 교수 및 학습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.

② 교수 및 학습 프로그램은 본교의 학칙과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규정 등에 따라 운영한다.

③ 센터는 교수 및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기초 연구 등을 지원한다.

제4조(교수학습지원센터의 운영)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수 및 학습방법 개선 프로그램 등의 세부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장 조직 및 역할

제5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제2조의 센터 직무를 통괄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장(이하 '센터장'이라 한다)을 둘 수 있으며, 총장이 임면한다.

②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수지원부(교수법, 교수 진단서비스, 신임교원 양성과정 등)와 학습지원부(학습법, 학습상담, 논문작성법 등)로 구성한다.

③ 센터에는 교수-학습법 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하여 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④ 연구원 및 조교는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.

⑤ 업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4장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

제6조(구성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센터장, 교학부장, 학과장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단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

로 한다.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내규 및 지침 등에 관한 사항
3. 교수 및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4. 교수 및 학습 프로그램 담당 교수 추천에 관한 사항
5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 5장 기타

제8조(재정)① 상담센터의 재정은 학교 예산에서 배정된 금액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②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 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